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19 호

1975. 9. 9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75 호 :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 3

제 97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조례..... 5

○ 규 칙

제 1506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개정규칙..... 7

○ 훈 령

제 429 호 :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8

제 430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도상금지급규정... 8

○ 관 리 규 정

제 43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관리규정) :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
승무원근무시간산출규정중 개정규정..... 12

제 4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관리규정)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
사명복무규정중 개정규정..... 12

제 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관리규정) :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
운전취급규정중 개정규정..... 13

제 46 조 (서울특별시지하철관리규정) : 서울특별시지하철사고
복구관리규정중 개정규정..... 27

1. 시 공무원은 "만드시" 하여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7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철 선로지장위급규정중 개정규정.....	27
고 시	
제 140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29
제 141 호 :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및지적승인.....	30
제 142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0
제 143 호 : 서울도시계획사업실행허가.....	31
공 고	
제 211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지정공고.....	32
사 령.....	32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9월 9일

○ 서울특별시 조례 975 호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공인의 남인전수가 과다하거나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특정부서에
서 공인을 별도 비치 사용코자
할 때에는 공인 교부기간으로부터
별도로 교부받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공인의 신조·계약) 공인을
신조 또는 계약하여 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도 제 2호서식으로 다음

에 의하여 교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등
제 1차 소속기관의 공인은 시장이
교부한다.
2. 기타 기관은 그 직급 상급기관
에서 교부한다.
3.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소속기관장이 공인 교부
기관에 신청하여 교부받는다.
다만, 시본청 소속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시장이
교부한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조 (공인대장) ①공인의 교부기관
은 별도 제 3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계약
또는 폐기할 때마다 인명을 알날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별 공인대장은 훼손 마
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
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8조를 삭제한다.

제 10조중 "1"을 삭제하고 "내
무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을"
교부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교부기관
장은 "로 한다.

제 11 조중 제 1. 2 항중 "내무국장" 을 "교부기관장"으로 하고 제 3 항중 "별지제 6 호서식의 폐인대장" 을 "별표제 3 호서식의 공인대장" 으로 한다.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공인관수자) ①공인은 각급 기관 문서취급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②외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주 관처에서 관수한다.

③공인관수자는 공인관수에 책임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중 "별표제 4 호서식" 및 "별표제 6 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제 3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제 3 호서식>

공 인 대 장

기 관 명	
용 도	
교 부 일 자	
사용개시일시	
사용개시당시 인 명	
폐 인 일 자	
폐 인 사 유	
폐인당시인명	
비 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9월 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76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공원법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이나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2. 기타 도시공원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3. 건설부 국립공원 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제 3 조 (심의배제사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기 시설공원의 경미한 시설보완 및 위치변경사항
2. 아동공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3. 공원용지 관리사항
4. 공원내 수목식재 및 경미한 조정계획
5. 공원의 사용 점용허가 및 변경과 취소사항
6. 동·식물원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사용료, 입장료징수 및 감면사항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과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서울특별시 녹지국장, 도시계획국장

2.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④서울특별시장은 권항의 위원이외에 공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공원 구역내에 국유지를 가진 재산 관리상의 관계 책임 공무원

2. 당해공원용지를 기증한 자

3. 특별히 당해공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나 관련이 많은 자
약간명

⑦특별위원은 당해공원에 관한 의견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 권한을 가진다.

⑥도시공원위원중 위원장과 ③항 제1호 위원은 당연직이며 제③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책) ①위원장은 공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소 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③소 위원회에 책임위원을 두고 소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제8조(간사, 서기 및 조사원) ①위원회에 따로 간사, 서기 각 1명과 조사원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과장, 서기는 공원관리 제장이 되며 조사원은 서장이 임명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조사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원계획에 관한 심의 자료를 수집정리 한다.

제 9 조 (수당등의 지급) 시 직원이 아닌 위원과 특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자료 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 11 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병원직계중 계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9월 9일

⑤ 서울특별시규칙제 1506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직계중 계정 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직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표전로과목중 아동병실 과목란 "마취과" 다음에 "정형외과"를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9월 9일 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상수도과경사무처리규정 중 계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29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과정사
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침사무처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누범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5매까지 과 할수 있으
며, 급수를 혼용하여 조례제 30조
제4항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
종으로 과태료 처분할 때에는 별
표 제2호의 과태료 처분배율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반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반명한다

1975년 9월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30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
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과징
제도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
여 처분하게한 공무원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수도사업
과징 제도의 발전 및 세입증대
(예산결감 포함)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부정급수의 범위) 전조

제2호의 부정급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정당한 급수사용료 등의
징수를 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급
수조례 제41조 각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부청공사
2. 업종간 급수혼용
3. 양수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급
수 시설의 설치
4. 양수기 조작

5. 정수처분 및 급수증지 수권의
임의사용

제4조(지급액)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징수 포상금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 1건당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다만 1건당 최
하 5,000원 취고 20만원으로 한다

3. 제도개선 유공자 포상금 -
1건당 3만원

②전항 각호의 포상금은 예산 형
편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으
며, 아이디어뱅크 선화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원 제안 규정에 의
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시기)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금 징수 포상금 -
징수한 익월

2.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 처분
이후

3. 제도개선 유공자 포상금 -
심사 완료후

제6조(지급방법) ①포상금은 관할

구청장의 신청(별지 제1호, 제2
호 서식)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제도개선 유공자 포상금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수령자로
특히 인명을 요할 경우에는 전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
의 처분 확인에 의거 시장이 직
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 위원회설치) 수도
사업 제도개선 제안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수도국장, 위원은 수도
행정담당관, 업무과장, 경리과장, 기
건과장, 수원과장, 급수과장, 시설과
장으로 하고, 간사는 서무 계장으
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
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심사) 제출된 제안에 따라

여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고 예비심사는 업무과장이. 본 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 10 조 (준용규칙) 수도사업제도 개선 제아의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이디어뱅크 설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과년도 미수액 징수 포상금은 1975년 6월 1일 이후 징수분 부터 부정징수 적발 포상금은 1975년 9월 1일 이후 처분한 건 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 1 호

과년도 미수액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1. 청구금액 금 원정액

2. 과년도 미수액징수 실적

가. 전월까지의 징수 누계

나. 당월 징수액

다. 당월까지의 징수누계

※ 세입보고서의 금액과 일치 하여야 한다.

1975. . .

8 0 0 구 청 장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저제 2호>

부정 급수 적발포상금지급신청서

1. 지급대상자

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나. 주 소 구 동 번지 호 (통 반)
 다. 소 속 (공무원의 경우 국 과 근무)

2. 지급액 금 원정 ₩

3. 처분내용

가. 피처분자 성 명 (수전번호 호)
 주 소 구 동 번지 호 (통 반)
 제 2 남부의무자성명
 주 소 구 동 번지 호 (통 반)
 제 2 남부의무자성명
 주 소 구 동 번지 호 (통 반)

나. 처분 금액

납 기	추징금	급수조례 41조 1항 과태료	급수조례 41조 2항 과태료	급수조례 41조 3항 과태료	합 계

다. 처 분 일 자 197

4. 기타 참고사항 (복기사항, 채권보존사항기재)

[Blank box for additional information]

1975.
○ ○ ○ 구 청 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관 리 규 정

시보제 515호 (1975.8.28)에
제재된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관
리규정 제 43호, 제 44호, 제 45조, 제
46호, 제 47호는 이를 무효로 하고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지하철건설승무원근무시간, 산
출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인)

② 서울특별시규정제 43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승무원근무
시간산출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승무원 근무
시간산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승무시간) 승무원의 1회계속
승무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2일부터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지하철 운전사명 복무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인)

◎ 서울특별시규정제 44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명
복무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전사명 복무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 발
2. 조상, 조하
3. 운행변경
4. 반복변경
5. 순서변경
6. 운전휴지

7. 운전선로변경

8. 착발선변경

9. 합병운전

10. 단선운전

11. 차량교환

제 15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차운전 취급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명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인)

○서울특별시규정제 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운전

취급규행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차운전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 (표제 "세부작업지침"을 "운전작업내규"로 한다.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완장의 착용) 차장, 구내원, 조차원, 책임자, 작업책임자 및 견널목 간수들은 작업중 다음 각호에 의한 완장을 완장에 착용하여야 한다.

1. 차 장	차 장	95mm (붉은바탕에 흰글자)
	40mm	
2. 구내원 · 조차원	구 내 원	95mm (녹색바탕에 흰글자)
	40mm	
3. 책임자		95mm (흰바탕)
	40mm	
4. 작업책임자 (보선, 건력, 신호, 통신)	작업책임자 보선 (건력, 신호, 통신)	95mm (동황색바탕에 흰글자)
	40mm	

5. 간 수 (전널목)

410 mm	
간	수

95mm (황색바탕에 녹색글자)

제 22조 다음에 제 22조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조의 2 (지연열차의 회복) ①

운전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는 허용속도 범위내에서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역장 또는 차장은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는 여객취급 또는 기타작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소정의 정차시분 단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조 (역장의 열차감시) 역장은 열차의 도착, 출발 또는 통과할 때에는 열차 감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호, 선로의 상태 여객의 상황에 주의하여 감시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운전사 또는 차장에게 비상정차수배를 하여야 하며 전호기 또는 전호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하철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감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대응색색 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 시발차 및 종발차 열차
3. 대응수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할 때
4. 출발지시 전호가 복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 2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9조 다음에 제 29조의 2 와 제 29조의 3 을 각각 신설한다.

제 29조 (신호의 주시와 진로에 대한 주의)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진로에 대한 신호를 주시하여야 하고 운전진로상 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또는 최전부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할때 전부에 승무한 차장 또한 같다.

제 29조의 2 (운전명령의 전달) 운전명령은 다음에 의하여 관계직원

에 주지시켜야 한다.

1. 정거장 및 차량공작소에서는 운전명령의 요항을 관계제원의 출동전 게시판에 게시할 것
2. 승무원리소에서는 운전사, 차장에게 별표제 1호서식의 달시전달표에 의하여 열람시킬 것
3. 전차호의 명령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정리할 것
4. 당일시행하는 운전명령으로서 관계제원의 출근후 수보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그 요항을 당해제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게시판 및 달시전달표에 적색으로 기입할 것.

제 29 조의 3 (운전명령의 주지) 운전 관계제원이 출근하였을 때에는 반

드시 게시된 운전명령을 열람하고 담당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하여야 하며 운전사 및 차장은 승무원에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0 조 (승무원에 대한 통고) ① 열차운전장의 승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할 때에는 운전사령이 발행한 운전지령서 (전송용)에 의하여 역장이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령이 운전지령서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령전화로 역장에게 지시하여 대령발행케 하거나 또는 열차무선으로 승무원에게 직접 통고할 수 있다.

이때 통고수령자는 통고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번호	통 고 사 항	통 고 대 상 자
1	규정 제 37 조의 2 각호로서 임시로 시행할 때	운전사 및 차장
2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을 변경할 때	운전사 및 차장
3	신호기의 불량을 알릴 때	운전사 (필요시 차장)
4	상위 신호기에 의하지 않고 수신호에 의한 때	" "
5	임시로 시행에 필요할 때	운전사 및 차장

제 31 조 다음에 제 31 조의 2 (사구간의 타력운전), 제 31 조의 3 (역행 및 타행운전의 이행) 제 31 조의 4 (전차선 구분장치의 전차금지) 제 31 조의 5 (이전압 구간의 운전금지)를 각각 신설한다.

제 31 조의 2 (사구간의 타력운전) 운전기사는 전차선 사구간 표지설치 구간을 운전 할 때에는 타력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 (역행 및 타행운전의 이행) 전차물 운전 할 때에는 타행표지 설치구간에서는 타행운전을, 역행표지 설치구간 부리는 역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4 (전차선 구분장치의 전차금지) 운전기사는 운전중 부득이한 사유로써 정지할 경우 "판타타그라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5 (이전압 구간의 운전금지) 전기방식이 다른 전차는 이전압구간에서 운전할수 없으며 회송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력으로 운전할 수 없다.

제 37 조 다음에 제 37 조의 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운전정리의 주요사항) 운전정리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발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킴을 말한다.

2. 조상, 조하

열차의 운전시각을 소정의 시각보다 일정시각을 앞당겨 운전함을 조상, 일정시각을 늦추어서 운전함을 조하라 한다.

3. 운행변경

열차의 운행구간을 일부변경, 단축 또는 연장함을 말한다.

4. 반복변경

열차의 지연등으로 전차의 반복역에서 소정의 증당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5. 순서변경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함을 말한다.

6. 운전휴지

시발역에서 종착역 까지 구간
간에 대하여 특정열차의 운전을
중지함을 말한다.

7. 운전선로 변경

선로소정의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전선로를 변경함
을 말한다.

8. 차발선 변경

정거장 구내에서 열차의 소정의
도착 또는 출발선을 임시로 변
경함을 말한다.

9. 합병운전

2열차를 합병하여 1열차로 운
전함을 말한다.

10. 단선운전

복선운전을 할 구간에서 일방선
로에 열차사고 또는 선로고장
등으로 인접 전거장 간을 통하
여 열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
우 타방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
하 열차를 운전시킴을 말한다.

1. 차량교환

차량의 고장 등으로 소정의 운

용순서를 변경하여 타 차량과
교환함을 말한다.

제 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7 조 (구내 운전의 게시와 전로

의 확인) ①구내운전을 할 때

에는운전사는 그 시단에 설치된
입환 신호기의 진행 신호 표시와
역장 또는 조차원의 시동전호에
의하여 운전을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구내에서 전선을 위
한 구내 운전으로써 차장이 승무
한 경우 시동전호를 차장이 할
수 있다.

②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종단은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 정지 표지
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 1항의 경우 운전 게시전에
역장, 조차원은 제 54 조에 의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역
취급에 의한 때는 궤도 조명판의
확인으로 이를 대명할 수 있다.

④전 1항의 시동전호는 필요에 따
라 역장, 조차원 및 차장 이외의
책임자나 특수 지시장리에 의한

대행 을 지 하 천 본 부 장 이 지 정 할 수 있다.

(주) 1. 조 차 의 이 하 는 시 동 전 호 는 입 환 전 호 방 식 의 " 가 타 " 의 전 호 에 의 하 는 것 으 로 한 다.

2. 차 장 이 하 는 시 동 전 호 는 출 반 전 호 의 " 부 자 " 방 식 에 의 하 는 것 으 로 한 다.

제 61 조 다 음 에 제 61 조 의 2 를 다 음 과 같 이 신 설 한 다.

제 61 조 의 2 (전 철 기 취 급 시 의 확 인) 전 철 기 를 취 급 하 는 제 원 은 전 환 전 에 열 차 또 는 차 량 이 전 철 기 를 통 과 하 여 전 환 에 지 장 없 음 을 확 인 하 여 야 한 다.

제 62 조 다 음 에 제 62 조 의 2 를 다 음 과 같 이 신 설 한 다.

제 62 조 의 2 (전 철 기 전 환 후 의 확 인) 전 철 기 를 취 급 하 는 제 원 은 이 를 전 환 후 에 는 다 음 각 호 에 의 하 여 완 전 히 전 환 되 었 음 을 확 인 하 여 야 한 다.

1. 집 중 제 어 방 식 의 제 1 종 제 전 역 동 장 치 일 폐 는 제 도 조 명 판

으 로 진 투 구 성 표 시 를 확 인 할 것.

2. 표 지 부 전 철 기 는 정 지 가 완 전 히 전 환 되 고 구 에 삽 입 되 었 음 을 확 인 할 것.

3. 수 병 전 철 기, 전 동 전 철 기, 전 기 전 철 기 및 발 조 전 철 기 를 수 동 으 로 전 환 하 였 을 때 는 전 철 기 가 완 전 히 전 환 되 었 고 점 단 계 조 가 기 본 계 조 에 밀 착 되 었 음 을 확 인 하 여 야 한 다. 이 때, 진 공 전 철 기 및 전 기 전 철 기 는 세 정 을 확 하고 " 스 위 치 " 를 개 로 상 태 로 두 었 다 가 열 차 또 는 차 량 통 과 후 폐 로 하 고 확 인 하 여 야 한 다.

제 101 조 (2) 항 다 음 에 (3) 항 을 다 음 과 같 이 신 설 한 다.

(3) 폐 색 의 취 급 및 승 인 에 대 한 통 고 방 법 은 다 음 에 의 한 다.

1. 상 대 역 장 에 게 대 하 여 " 00 열 차 폐 색 " 이 라 고 통 고 할 것.

2. 전 호 의 통 고 를 받 은 역 장 은 00 열 차 폐 색 승 인 이 라 고 응 답 할 것.

제 10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2 조 (폐색의 폐색) ①복선지도자식 또는 지도자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 역장은 지도자의 하차를 확인하고 상대역장과 다음에 의하여 개통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일부차량 유류하고 도착하였을 때는 개통수속을 할 수 없다.

- 1. 상대역장에게 ○○열차도착 이라고 보고할 것
- 2. 전호의 농고를 받은 역장은 ○○열차도착승인 이라고 응답할 것

②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열차가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회행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상대역장에게

1. 복선 지도자식용

가. 상본선용

폐색표	간 상선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폐색바탕
	400mm		

폐색표	간 상선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
	400mm		

나. 하본선용

폐색표	간 하선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
	400mm		

폐색표	간 하선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
	400mm		

다. 지도식

폐색표	간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
	400mm		

폐색표	간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80mm	"
	400mm		

그사실을 보고할 것.

제 103 조 다음에 제 103 조의 2 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3 조의 2 (폐색구간상태의 표시)

①폐색구간 양단의 정거장 역장은 다음에 의하여 구간이 상대편 표시하여야 한다.

- 1. 폐색수속을 하였을 때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를 특설의 전화기에 게시할 것
- 2. 개통수속을 하였을 때 열차 폐색구간에 없음의 표시를 특설의 전화기에 게시할 것 폐색수속을 취소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전호의 각호의 상태표시 표의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 10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8 조 (지도자의 승하차) ①역장은
부선지도자식에 의하여 운전하는 열
차를 정거장으로부터 출발시킬 때에
는 폐색수속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고 그 폐색구간에 대한 지도자
를 운전사와 동승시켜야 한다.
②전향의 경우 역장은 열차가 정거
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도자를
하차 시켜야 한다.

제 14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6 조 (신호현시상대등의 환호) 운

전사, 차장 및 신호를 주지토록
정하여진 계원으로신호를 확인
하였을때 상호 또는 단독으로 다
음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환호하
여야 한다.

(주) 신호를 주지토록 정하여진 계원
이라함은 역장, 조차원, 구내원, 신
호원, 유도원 및 운전사행동을 말
한다.

제 151 조 표시방법중 지하철선의 형
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1 조 양식

선 별	신 호 구 분	진로가중앙 으로부터좌 측선도로개 통되었을때	진로가중앙 진로로개통 되었을때	진로가중앙 으로부터우 측선도로개 통되었을때	진로가주 본선으로개 통되었을때	진로가부 본선으로개 통되었을때	진로가도 착선으로개 통되었을때
지 하 철 선	색 등 식 신 호 기 용						

제 184 조를 다음에 제 2 항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184 조 (수신호의 현시방법) ②수신
호대신에 수신호대용기를 사용할때의
현시방법, 색채 및 형상은 다음과
같다.

(주) 수신호 대용기는 관계 전철기와
연동되고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
하였을때 자동적으로 정지신호가

현시되는 장치를 갖추는 것으로
한다.

종 류 구 분	정지신호	진행신호
주간및 야간		

①전항의 수신호대용기의 설치장소는 지하철본부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 186 조 다음에 제 186 조의 2를 신설한다.

제 186 조의 2 (수신호예고후의 취급) 수신호기 고장기타로 인하여 수신호 또는 수신호 대용기로서 대응할것을 승무원에게 통고하였을때는 고장 복구한 경우라도 수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복구하여 상치신호기에 의한것을 제차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8 조 (수신호 및 수신호대용기의 현시위치) ①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대한 수신호 및 수신호대용기의 현시 및 설치위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수신호-당해신호기 설치위치
 2. 수신호대용기-당해신호기 하위에 설치하여 유도신호기또는 진로표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하위에 설치한다
- 다만, 수신호예있어 그 현시가 열차에서 인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때는 그의방적당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②정거장에 2개이상의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었을때의

수신호 및 수신호 대용기의 현시 위치는 최외방의 신호기에서 현시하여야 한다.

제 20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2 조 (출발전호의 요건)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차장은 출발신호기 (또는 신호증거기) 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를 확인후 운전사에 대하여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역장의 출발지시 전호가 있어야 한다.

1. 대응색방식 또는 진행법을 시행하는 경우로써 출발하는 열차
2. 시발 또는 증발열차 일대
3. 수신호에 의하여 출발할때
4. 출발지시전호를 지정받은 정거장 일대

제 263 조 다음에 제 265 조의 2를 신설한다.

제 265 조의 2 (열차 안전확인)의 정거장 ①역장 및 차장은 열차가 정거장에서 출발후 열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을때는 적당한 시기에 상호 다음에 의하여 안전

확인의 집무전호를 하여야 한다.

이때 전호는 차장이 먼저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 : 우수를 수평으로 뺀다.

야간 : 백등을 콰우로 끈는다.

주 1. 지하철 구간에서는 주, 야간같이 주간방식에 의한다.

2. 적당한 시기라 함은 최후부 차량이 승강장 끝부근에 이르렀을때를 말한다.

②전항의 집무전호는 제 27조에 지정된 책임자도 시행하여야 한다.

제 26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7 조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의 방호) ①정거장 외에서 탈선 전복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하였을 경우에는 속행열차에 대한 방호를 하기전에 그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에 대하여 지장 지역의 전후 양방향에 제 2종 방호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장선로가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 일때에는 거화신호를 현시한후 즉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②부선 구간에서 정거장 외물 운전중 인접선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때는 속히 열차를 정지시키고 당해 선로의 지장지역의 전후 양방향에 대하여 제 2종 방호를 한후 운전사형 또는 다음역 도착후 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전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는 방향을 확지할 수 있을때에는 그 방향에 대한 방호는 생략할 수 있으며 수도권 C.T.C 전철구간에서는 제 1종 방호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77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7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77 조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열차가 정지한 경우의 방호) 자동 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 외에서 열차사고 기타로써 정차하였을 때 차장은 속히 다음 각호의 방호수법을 하여야 한다.

1. 지하철 C.T.C 구간에서는 후방에 주의하면서 후속열차가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열차 후방 100 미터 이상 거리에 신호 뇌관에 의한 정지신호를 현시 하여야 한다.

2. 수도권 C.T.C 전철구간에서는 속히 열차의 후방에 제 2 종 방호 수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차 시분이 1분 이내의 단 시분으로 인정 될 때에는 정지 수신호를 대응할 수 있다.

3. 전 1 항 및 2 항의 경우 전차량 이 발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치 않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기화 신호를 현시한 후 즉시 단락용 동선으로써 이를 단락 하여야 한다.

제 277 조의 2 (자동폐색식 시행구간 반자동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열차 정지한 경우의 방호)

①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 외에서 반자동의 신호기 또는 이에 대응하는 수신호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열차가 정지한 경우 차장은 속히 열차의 후방에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열차 후방에 주의하고 후속 열차가 접근 하였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열차의 후방에 기화 신호를 현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수도권 C.T.C 전철 구간에서 속행열차로 부터 정지 수신호의 인식거리가 300 미터 이상되지 않을 때에는 열차 후방 100 미터 이상의 거리에 정지 수신호를 현시 하여야 한다

③ 전제 1 항의 경우 전 차량의 발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치 않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④전 제 1항의 경우 그 후방의 신호 기가 반자동의 신호 기인 경우에는 방호를 하지 않는다.

제 283 조 다음에 제 283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83 조의 2 (운전허가자가 승차치 않은경우의 처리) ①부선지도자식 지도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정당한 운전허가자가 승차치 않은 것을 발견한 운전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 시키고 그 사유를 차장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②간 항에 의하여 정차 하였을 지장 및 운전사는 열차의 전후 양 방향에 대하여 제 2종 방호를 한후 속히 운전사령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사유를 통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권 C.T.C 전철구간에서는 제 1종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전화불통으로 전항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운전사는

시시 단급 기적수성의 전호를 하고 15/H이하 속도로써 운전할 수 있다.

제 28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7 조 (선로 등 고장으로 열차를 서행시키는 경우의 조치) 정거장의에서 선로 또는 전차선 등의 고장 또는 지장이 있을 때 서행에 의하여 현장을 통과 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제 288조에 의하여 열차를 일단 정지시킨후 운전사에게 사유를 통고하고 협의를 한후 서행 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 28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8 조 (신호등 고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선제원등의 조치) ①정거장의에서 선로 또는 전차선 등의 고장 또는 지장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열차 운전상 위함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보선제원 또는 전기제원은 속히 해지역의 전후 양 방향에 제 2종 방호를 한후 그 사실을 운전사령 혹은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은 방향을 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방향에 대한 방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현장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전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O.T.C. 전철구간에서는 제 1종 방호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본조의 경우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야 한다.

제 301조 (속도제한표의 표시방법) 중 (주)2호 다음에 3호를 신설한다.

(주)3. 사각형은 분기부용, 원형은 본선 및 측선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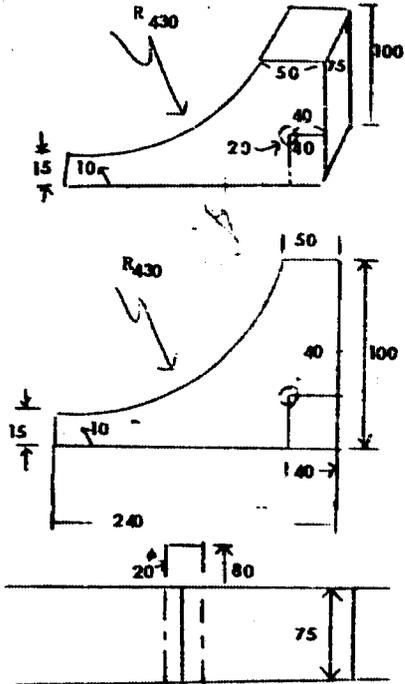
제 303조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사각형은 분기부용, 원형은 본선 및 측선용으로 한다.

제 316조 다음에 제 3장 차륜지를 신설하고 제 317조 내지 제 320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3장 차 륜 지

제 317조 (수용차륜지의 규격) 수용차륜지의 형식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주) 1. 궤로는 전철목재로 한다.
- 2. 좌석은 전벽돌 벽석으로 한다
- 3. 치수는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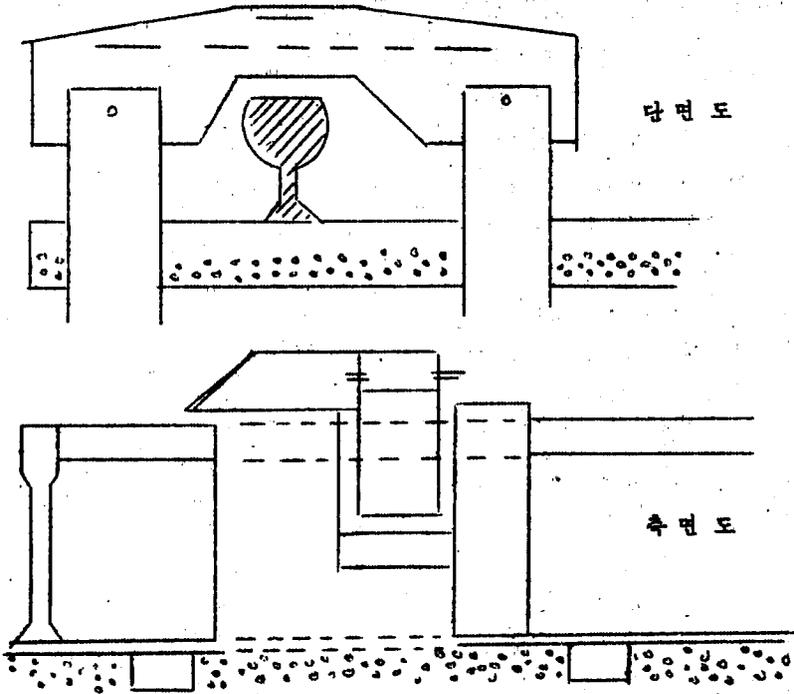
제 318조 (반전식 차륜지의 설치)

①차륜을 유치시키는 정차장 기타 장소로서 구배관계로 의하여 유치차량이 일주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차량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식 차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㉔ 반전식 차륜지의 설치는 관계소속장의 판단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한다.

제319조 (반전식 차륜지의 규격)

반전식 차륜지의 목재로써 상반은 적색, 하반은 백색(페인트)로 도장하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제 320 조 (반전식 차륜지의 페색)

반전식 차륜지는 그 일단을 고정하여 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륜유치중 입환을 할 경우의에는

반드시 이를 페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일부더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사고복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10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제 46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사고복구
관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사고복구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사고복구의 우선순위) 사
고복구 및 처치에 있어서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 1 순위 : 인명구조작업

제 2 순위 : 선로개통 (본선 및 동력차
출고선 지장시)

별표 제 3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지하철 선로지장 취급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11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제 47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선로지장
취급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선로지장취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제 1 항중 "절차를 필하고
트로리를 사용할 때에는" 불 "절
차를 필하기전에" 도 "관계소장에
게 보고하고 운전사령에게 통고하
여야 한다" 문 "관계소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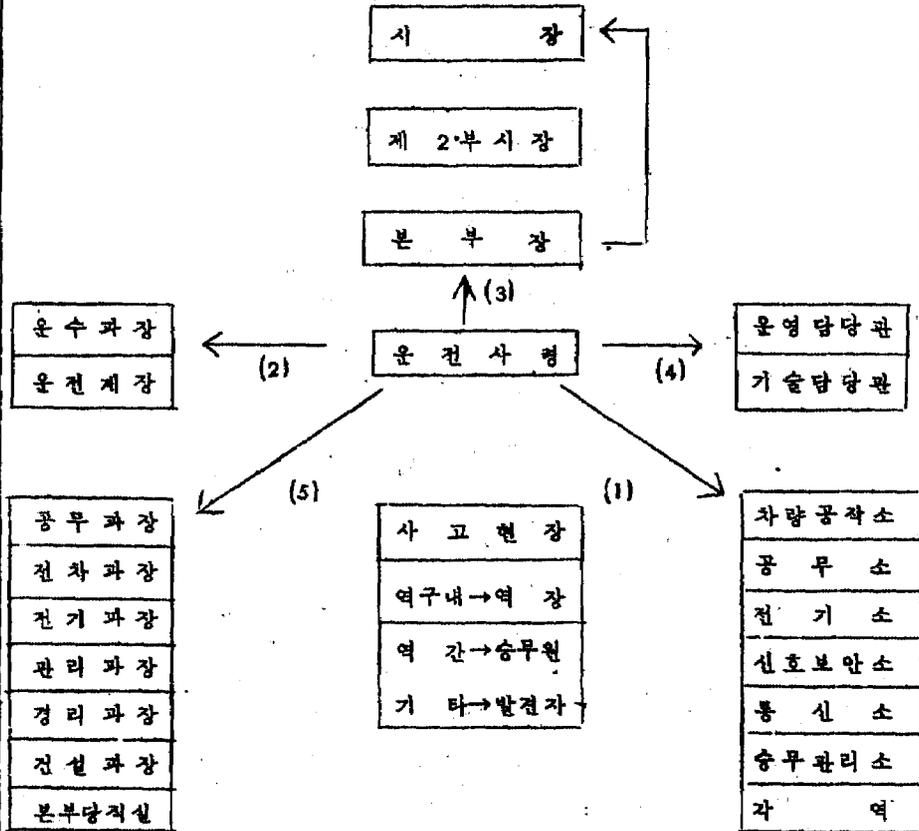
제 15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함의 트로리 사용의 통고를 받
은 역장은 운전사령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 트로리 사용에 지장
이 없으면 운전지 조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 15 조 제 2 항 다음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함의 트로리 사용의 통고를 받
은 운전사령은 전선이 필요한 때
에 한하여 관계역장에게 전선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

운전사고발생시 비상연락계통도



운전사령의 전파연락분담

A 반	(1)번 연락
B 반	(2)(3)번 연락
C 반	(4)(5)번 연락

본청당직실

<p>제 16 조를 삭제한다.</p> <p>제 17 조 제 6 호 중 "협의한 운전구간을 지나서 사용할 때에는" 을 "협의한 운전구간을 지나서 작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때에는" 로 한다.</p> <p>제 19 조 제 1 호 "직선부 및 반경 300 이상의 곡선 --- 35km/日" 을 "직선부 및 반경 300 이상의 곡선의 가. 통표의 규격 및 보관</p>	<p>전인 운전경우 --- 35km/日로 한다.</p> <p>제 19 조 제 5 호 다음에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단차의 경우 --- 45km/日</p> <p>제 20 조를 삭제 한다.</p> <p>제 23 조 제 2 항 다음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통표의 규격과 보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p>
---	--

현업별	규격 및 색	트로리 사용시 보관책임자	트로리 사용않을시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공무소	저색 10cm X 8cm	작업지휘자	트로리유치역	역장
권기소	황색 "	"	"	"
신호소	녹색 "	"	"	"
차량동작소	백색 "	"	"	"

나. 보관장소의 트로리 유치역은 지하철본부장이 지정한다.

다. 소속별 트로리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트로리 운전시에는 해당 색갈별 및 일련번호별의 통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8월 18일 부터 적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140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및 건설부 고시 제 95 호 ('75.6.13) 로 지정 고시된 녹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환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 및 해당군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에게 보이게 한다.
 1975. 8. 8.
 서울특별시 장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단 위
녹 지 지 역	경기도 시흥군 서면 일부	5,500,000	서울시도시계획
"	도봉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창 동, 공릉동, 월계동, 각일부	11,650,130	구역경제선까지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해당 군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을
 가. 시 설 조 서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 (73.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5. 8.

서울특별시 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동부도시 가스 공급설비	성동구 대치동일부지역	33,025 평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출장소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42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하수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2. 하수도 변경조서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9. 11

서울특별시청

구분	종류	규모	기	점	종	점	연장	비고				
기	정	암	거	3m	X	3.5m	총	무로 5가 70-41	총	무로 5가 67-1	57 m	
변	경	"	"	"	"	"	"	"	"	"	54 m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3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하수도

이설공사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 시행령 제 27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의 위치 : 중구 총무로 5가 19-14 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가) 종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나) 명칭 : 하수도이설공사

다) 규모 : ① 암거 : 3.0m X 3.5m

L = 44

② 잠수암거 : 3.5m X 4.0m

L = 10

③ 암거변폭 : 1,100 X 1,100 X 19% 2개소

④ 기타 부대설비 1식

3.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중구 총무로 5가 19-9 오 경숙

4.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 1975.9.11 - 1975.12.1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없음

6.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없음

7. 허가조건 : 생략함.

1975. 9.

서울특별시청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1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신림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제 185 (75.8.22)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별첨 조서및 도면과 같이 지정하였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 47 조 및 동법제 56 조 해당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 경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을 공고일로 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 정지 지정서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환지예정지 지정서 및 도면: 조서 별첨, 도면 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1975. 9. .

서울특별시 장

사 령

◎ 1975.9.11

아동과 지방행정 구영숙

아동과 아동복지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5.9.12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민경창
기 사 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5.9.21(발령제 210호) 징계처분(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전책에 처함.

은평출장소 지방토목 지영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5.4.17(발령제 192호) 징계처분(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전책에 처함.

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 이병일
기 과

용산구보건소 방역과장에 포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최인규
기 과

도봉구보건소 방역과장에 포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이정환
기 과

성동구보건소 방역과장에 포함.

◎1975. 9. 12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
기 사 해규상
보광동 수원지사사무소 근무
를 명함.

연표시험소 지방화공
기 원 임동혁
보광동 수원지사사무소 근무
를 명함.

영 선 과 지방건축
기 사 보 이정구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사 민 회 관 지방건축
기 사 보 양용호
영선과 근무를 명함.

열동출장소 지방건축
기 사 보 심관중
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건영진
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원 이상열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원 박준권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건축
기 원 보 이순조
주매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기
기 원 송태근
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기
기 사 보 김종덕
성동구 근무를 명함.

기 전 과 지방기
기 사 보 김삼욱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
기 원 홍만기
기전과 근무를 명함.

시 대 문 구 지방건
기 원 보 정영철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적기
기 원 보 박전수
도봉구 근무를 명함.

시 설 과 지방토
기 사 보 황경우
죽도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

죽도수원지사사무소 지방토
기 사 보 김형길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p>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이완호</p> <p>영등축장소 근무를 명함.</p> <p>개량 2 과 지방토목 기 원 김삼덕</p> <p>공원과 파견 (75.9.12 - 75.12.11) 근무를 명함.</p> <p>은평축장소 지방토목 기 원 강희진</p> <p>개량 2 과 파견 (75.9.12 - 75.12.11)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이철</p> <p>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유태봉</p> <p>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정병선</p> <p>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노재천</p> <p>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보 김상희</p> <p>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보 주치호</p> <p>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보 김종은</p> <p>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윤석조</p> <p>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김남현</p> <p>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김중섭</p> <p>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강영안</p> <p>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보 이종열</p> <p>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종로구보건소 지방약무 기 사 보 최승완</p> <p>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보건소 지방약무 기 사 보 이찬</p> <p>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	---

<p>용산구보건의소 지방약무 기 원 윤진규</p> <p>종로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성북구보건의소 지방약무 기 원 보 김준배</p> <p>서대문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보건의소 지방약무 기 원 보 김명준</p> <p>성동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영동포구보건의소 지방약무 기 원 보 윤결중</p> <p>동대문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성동구보건의소 지방약무 기 원 보 구자운</p> <p>영동포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성동구보건의소 지방수의 사 보 이병동</p> <p>중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도봉구보건의소 지방수의 사 보 연훈</p> <p>성북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성북구보건의소 자감수의원 허인용</p> <p>성동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축산물 위생검사소 지방수의원 이상업</p> <p>도봉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도봉구보건의소 지방간호 기 원 김유미</p> <p>용산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용산구보건의소 지방간호 기사 보 김영자</p> <p>도봉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김광언</p> <p>지방건축 기원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	---

사 율 목 별 시 장